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414번
-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찬성자 14명)
- 발 의 일 : 2019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현 조례상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주관기관인 시가 아닌 보조대상기관인 교육청에서 심의를 주관하는 문제를 초래하는바, 시 평생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 평생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2조 제1항).

- 시 재정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안 제12조제1항).
-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시 교육정책과장, 교육청 예산담당관)으로 조정(안 제1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2.12. ~ 2.1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의 회의불참으로 교육경비의 보조대상 기관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안제15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본 조례1)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임기 2년)하고, 교육경비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을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심의와 사업종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하여 정기회(연 1회) 및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요 >

-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2조
- 구성 : 14인(당연직 5, 위촉직 9)
 - 당연직(5명) : 서울시(2명) 및 시교육청(3명) 관계 공무원
 - 위촉직(9명) : 시의원 3명, 언론계·교육계·학부모 등 6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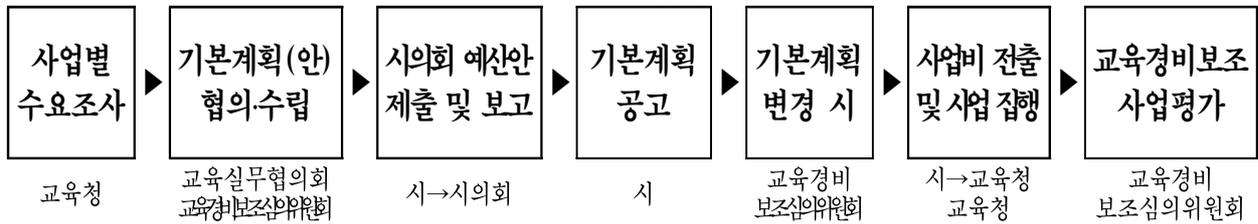
- 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1,266억6천만원 규모의 62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했으며, 평생교육국은 2019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0개 사업에 5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조례상전출금의 교육경비보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사업수
2016년	41,716,237	38,757,653	92.9%	18개
2017년	56,677,000	54,118,724	95.5%	28개
2018년	28,268,189	정산중(2019년 상반기 상임위 보고예정)		16개
소계	126,661,426			
2019년	53,300,000	-	-	20개

〈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절차 〉



※ 교육경비보조금은 법령²⁾에 따라 서울시 재량 범위 내(서울시는 본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편성)에서 서울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수요 대응 목적,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0이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별 조건을 지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1항 본문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하 '시 기획조정실장')에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시의 기획조정실장</u>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서울특별시 교육청의</u>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시 평생교육국장</u>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u> 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 동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시 기획조정실장의 불참으로,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보조를 받는 기관의 인사가 보조금의 대상선정,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의 대상이 평가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심의위원회는 2017년 이후 개최 횟수는 7회(서면심의 2회 포함)이며, 전체 위원들의 참석률은 71.4%인데 반해, 시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률은 14.3%에 불과(서면심의만 참여)하고,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80.0%의 참석률을 보였음.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위원참석 현황 〉

(단위 : 명)

	소계	당연직				위촉직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서울시	교육청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수	14	1	1	1	2	9		
회의 개최 및 참석위원수								
1	2017. 3. 3.	12	-	-	1	2	9	
2	2017. 5. 2.	10	-	1	1	1	7	
3	2017.10.27.	9	-	1	1	1	6	
4	2018. 1.22.	10	1	1	1	2	5	서면심의
5	2018. 3. 9.	9	-	1	1	1	6	
6	2018.10.29.	10	-	1	1	1	7	
7	2019. 1.21.	10	-	-	1	2	7	서면심의
참석현황								
참석위원수	70	1	5	7	10	47		
참석률	71.4%	14.3%	71.4%	100%	71.4%	74.6%		
서면심의 제외 참석현황								
참석위원수	50	0	4	5	6	35		
참석률	71.4%	0.0%	80.0%	100.0%	60.0%	77.8%		

※ 의원요구자료 142번(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재구성

-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 방법 등은 지원의 주체인 서울시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짐.
- 다만, 조례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 전, 시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률 제고 방안, 위원장 변경 시 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 여부, 위원회 개최 및 실행력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5조제2항은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이면서,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인 평생교육국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은 시 재정기획관으로,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 교육관련 담당과장과 교육청 예산관련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직책과 직무적정성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1. (생략) 2. 당연직위원 : <u>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 교육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u> 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위원 : <u>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u> 으로 한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② 위원장은 <u>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u> 으로 한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② 위원장은 <u>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담당관)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담당관)</u> 으로 한다.

〈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 비교 〉

	현행	개정안	비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장	<u>서울시 기획조정실장</u>	<u>서울시 평생교육국장</u>	변경
부위원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시의원3명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과 교육감이 위촉한 자	시의원3명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과 교육감이 위촉한 자	
당연직 위원	<u>서울시 청소년관련 담당 국장</u> <u>서울시 교육관련 담당 국장</u>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u>서울시 재정기획관</u>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변경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	<u>서울시 교육관련 담당 국장</u>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u>서울시 교육관련 담당 과장</u> 교육청 예산관련 담당 과장	변경

- 부수적으로, 조례 제12조는³⁾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하로 하고 있으나, 현재 14명으로 운영 중이며,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외로 13인으로 운영될 예정인바, 위원을 충원하여 사전 심의기능과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조례 제2조에는 교육경비는 유치원과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교와 학생⁴⁾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는 유치원보다 초·중·고에, 사립보다 국·공립에, 교육프로그램 지원 또는 교·보재 지원보다 시설예산에 집중되고 있는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실제 지원범위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3)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